

APEC Engineer의 審査登錄 事務局 設置와 關聯된 建議文

Letter of Petition to the Mr. President D. J. Kim Regarding
the Monitoring Committee of APEC Engineer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과총회관 신관 802호) 한국기술사회
東南亞 및 太平洋 地域 工學會聯合 Tel:02-538-2451,Fax:02-538-9046

분류번호 : 공학 제99-01호

시행일자 : 1999. 2. 19

받 음 : 김 대중 대통령
참 조 : 과학기술 담당관

제 목 : APEC Engineer의 審査·登錄 事務局 設置와 關聯한 建議文

1. 多忙하신 國事に 手苦하시는 김 대중 대통령님의 앞날에 健勝하심을 비나이다.
2. 제목과 관련하여 科學工學徒의 한 사람으로서 一部 公務員의 極히 官僚的이며 구태의연한 思考방식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발전에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損失을 가져오는지 국민의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仰望합니다.

붙 임 : 1. APEC Engineer의 심사등록 사무국은 과학기술부 소관
한국기술사회내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서 ----- 1부

2. 노동부 분류번호 자격 68570-47(시행일자 1999.2.4)
제 목 ; APEC Engineer 사업참여 추진에 관한 업무 협조 공문
사본 ----- 1부. 끝.

東南亞 및 太平洋 地域 工學會 聯合
FEISEAP, 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ions of Southeast
Asia and Pacific
副會長 許 堧

1. 韓國技術士會 內 獨立機構로 設置해야 하는 理由書

1. 概 要

技術士와 관련한 APEC Engineer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 해당 技術分野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 ”로 自國에서 시행하는 技術士 시험에 합격한 者가 대상이 됩니다.

이 技術士가 APEC 地域 內, 技術士로서 技術士業(Consultant)을 行하고자 할 때는 地域事務所를 통하여 APEC Engineer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밟은후 國際적으로 相互認證하는 資格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에, APEC Engineer 제도는 技術士가 APEC 域內로 進出, 技術士 業을 行하고자 할 때 該當 國家間 상호 同等한 技術士로서 禮遇를 받도록 하는 制度를 말하는 것입니다. 1999년 2월 현재 우리 나라의 技術士 배출수는 약 20,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 APEC Engineer 必要性

(1) 우리 나라의 技術士와 연계함에 國內 市場의 依存的인 過當競爭을 비롯하여 技術 開放化로 인한 國內 엔지니어링 受注 活動의 위축을 탈피할 수 있으며

(2) IMF의 현실을 再考함에 技術業인 엔지니어링 주체활동을 海外進出로 活路를 開拓함에 우리 나라의 技術立國이 擴大, 強化되고

(3) 특히 선진 外國의 技術士가 우리 나라에 진출함으로써 産業과 建設業體의 構造調整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GS(Groval Standard)를 모범으로 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體質改善의 방향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국제시장 진출의 확대와 無限技術 競爭力強化를 鼓吹하게 될 것입니다.

3. APEC Engineer의 節次

APEC Engineer의 업무영역, 정보교환, 기술사의 상호인증 문제, 자국의 기술발전등 相互交流를 촉진함에 필요한 國家別로 審査 登錄 委員會事務所(Monitoring Committee, Secretary)을 설립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日程에 따라 APEC Engineer의 國家間 協商이 發足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선적 內容의 議題인 急先 業務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98年 12月 각국은 事務所設置 機構組織, 審査登錄 基準 및 技術士 資格關聯事項 등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濠洲工學會 APEC Engineer 擔當에 보고토록 한다.

(2) '99年 4-5月 各國 實務者 會議에서 上記件을 整理한다 (於 Sydney)

(3) '99年 8-9月 제 1회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에서 協議토록한다 (於 東京)

4. APEC HRD와 FEISEAP의 關聯事項

간략하게 표현하면 APEC HRD는 GO이며 FEISEAP는 NGO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자가 되는 FEISEAP의 역할이란 APEC HRD의 役割과 비슷하다 할 수 있으

나 엄밀한 업무영역은 주로 專門知識의 諮問 役割이 責務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WCEET(世界工學教育訓練會議), AEESEAP(東南亞工學教育協會), WFEO(世界工學協議會) 및 UNESCO 등은 상호 기술적 사항에 관한 協議機構로 NGO입장에서 상호정보교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APEC Engineer 審査·登錄 설치 사무국과 관련한 개혁

APEC Engineer 會議의 협의에 따라 '98年末까지는 審査·登錄專務局設置에 關한 서류를 Sydney 本部에 보고해야 하는 節次에서 APEC Engineer 擔當部인 教育部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本人이 進言한바, 다행히도 1998年 12月 22日 教育部 主催로, 政府로서는 勞動部, 科學技術部, 外務通商部와 民間機構로서는 韓國技術士會, 韓國엔지니어링 振興協會, 그리고 學界로서는 大韓土木學會등 官民學界 合同 모임을 갖고 反對意見이 없이 APEC Engineer 技術士 關聯 審査·登錄 設置 專務局을 韓國技術士會가 맡기 爲해서는 現在의 教育部에서 科學技術部로 移管토록 해야된다는 결론을 合議한 바 있었습니다.

本人은 그 이후 1998年 12月 22日부터 1999年 2月 11日까지 數次에 걸쳐 科學技術部 科學技術人力課長(담당자;이 성봉 事務官)을 찾아 뵙고 그간의 각종 國際的 情報와 資料를 제출하고 이의 검토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성봉 사무관은 추후 검토하여 연락을 하여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기에 지난 2月11日 本人이 再次 방문하니 勞動部 資格振興課 이 신재(教育部 主催 '98年 12月 22日 會議에서 노동부를 대표한 參席者)課長 名義의 '99年 2月 4日附로 勞動部 傘下 韓國 産業人力 公團으로 移管되도록한 公文을 接受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2참고)

삼가, 多年間 本人이 국제회의에 참석한 결과 APEC HRD에서의 주된 의제는 2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하나는 APEC Engineer Project 이며, 다른 하나는 Vocational & Traing Project(기능 및 훈련)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참작할 때 기능을 다루는 韓國 産業人力公團이 前者를 다루도록 하는 부처의 행정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고도의 전문 지식산업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의 추진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일부 공무원의 진부하고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닌가 사료되기에 이러한 不合理한 點을 再考하여 주실 것을 建議드리는 바입니다.

6. APEC Engineer 資格

APEC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사 移轉이 必須的이라는 關係 會議의 결의에 따라 APEC 傘下의 인재발전 W/G(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Group)에서 검토하게 되었으며 호주의 제안에 따라 기술사의 相互認定, 承認 및 촉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評價를 講究한 바 있습니다.

○ APEC Engineer의 登錄要件

APEC Engineer의 概念規定은 「實質的 同等性を 認定하는 Engineer는 經驗을 바탕으로 自己判斷으로 業務(Consultants Business)를 遂行할 수 있는 Engineer」 등으로 하며 各國의 意見一致로 다음과 같은 合意를 얻은 바 있었습니다.

① 各國에는 APEC Engineer를 審査·登錄하는 Monitoring 委員會를 둔다.

② APEC Engineer 登錄者는 다음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 認定 또는 承認된 Engineering 課程을 修了한 者
- 自己 判斷으로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고 該當國의 機關으로 부터 認定된 者
- Engineering 課程 修了後 적어도 7年間の 實務經驗을 가질 것
上記 7年間中 責任있는 業務經驗이 있어야 한다.
- 繼續的인 專門能力開發(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이 滿足할 만한 Level을 維持해야 한다.
- 他國 勤務時 自國과 같이 그 나라 行動規範 및 職業論理를 遵守해야 한다.

以上과 같이 審査登錄된 APEC Engineer를 技術능력의 質적 同等性(實質的 同等性 協정)을 인정하고 受入國에서는 業務, 免許交付의 절차를 간소화(상호면제협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APEC Engineer로서 만족할 만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合意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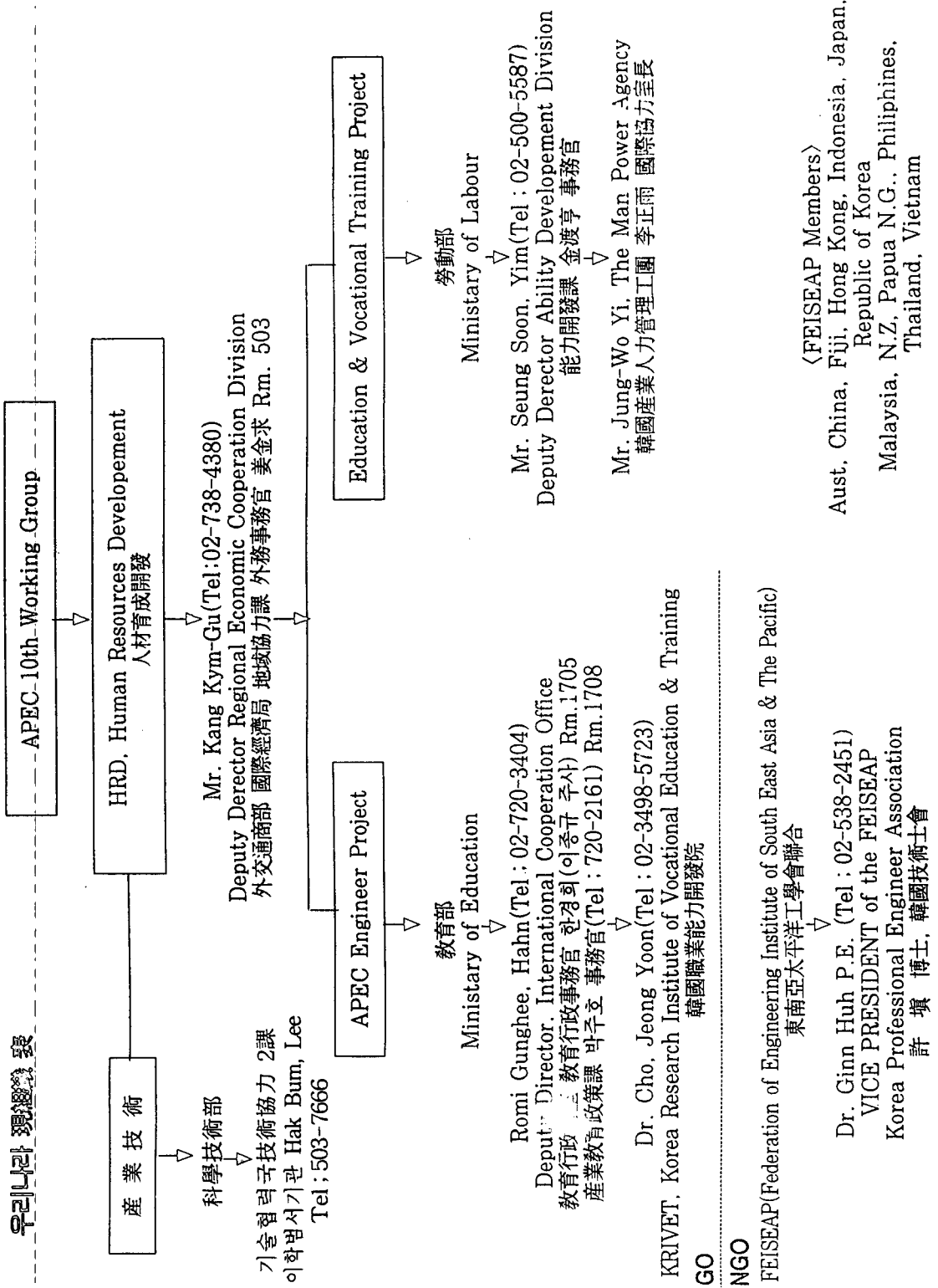
- 言語 ; 特定國의 언어를 갖추어야 한다는 要件은 없다.
英語를 共通어로 한다.
- 業務遂行 ; 필요한 현지여건, 기술요건 등에 대해서 적절한 이해능력을 필요로 한다.
- 職業倫理의 遵守 ; 自國 및 相對國의 직업윤리를 존중해야 한다.

7. APEC Engineer의 事務局을 勞動部 (산업인력공단)가 主管함이 不當한 理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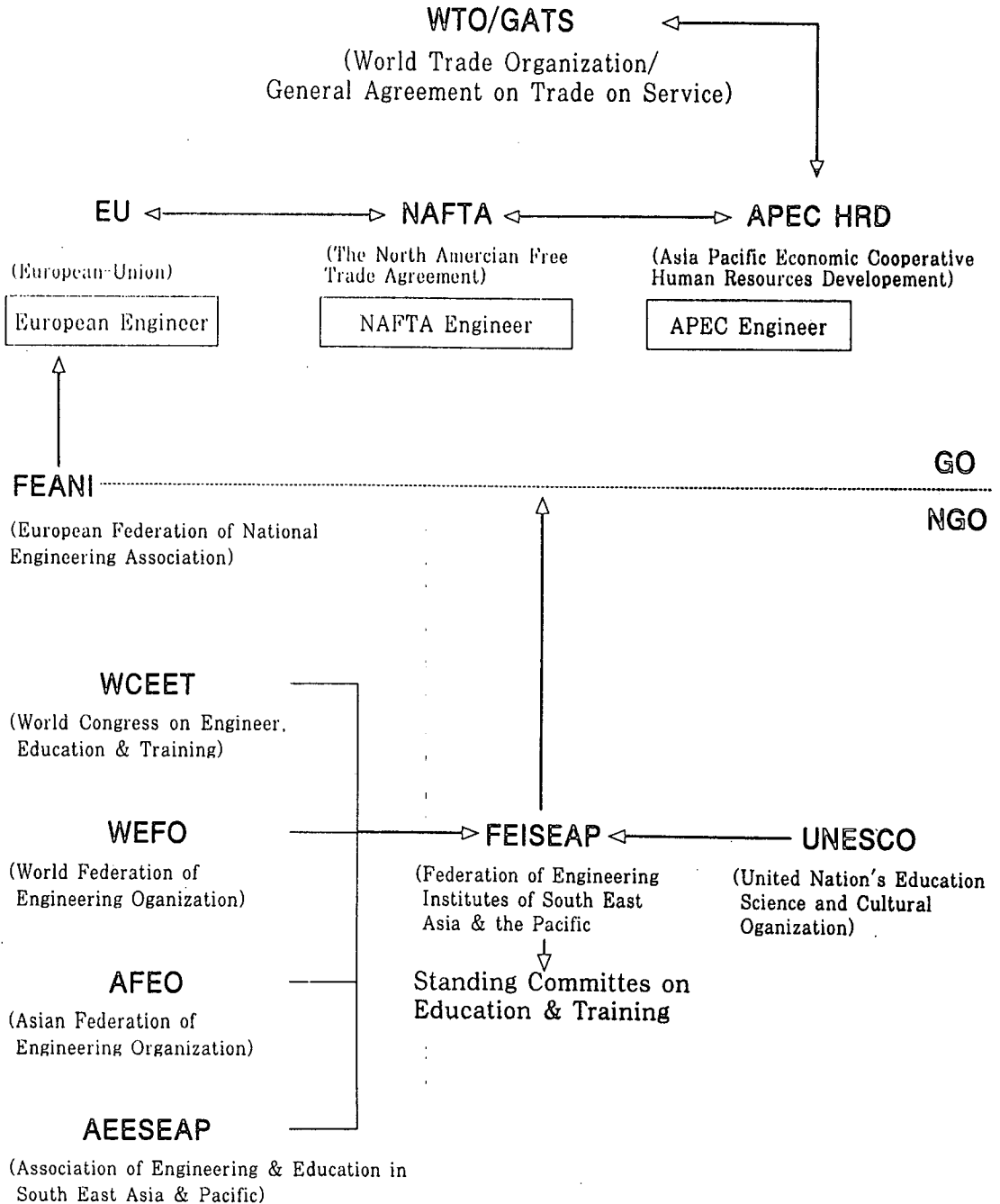
첫째, APEC HRD 傘下교육 및 技能者 Education & Vocational Project를 勞動部가 맡고 있으며 APEC HRD의 APEC Engineer Project은 호주, 일본등 대다수가 과학기술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둘째, APEC Engineer의 審査·登錄 事務局은 獨立된 機構(Monitoring Commottee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omprising Experts From Government, Academia & Industry ets)로 政府 및 政府 任命機構는 맡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以上 오는 4月 Sydney에서 開催되는 實務者 會議前에 韓國의 事務局設置 報告書 提出이 지연되면 當分間 韓國의 APEC Engineer 관계는 자연히 누락됨을 豫見할때 國家위신에 關한 問題가 됨을 깊이 參酌하시고 올바른 指針을 내려주시길 建議합니다.



APEC HRD와 FEISEAP



- ※ 1. Washington Accord
- 2. FIDIC

노 동 부

우 427-760 경기 과천 중앙 1 / 전화503-9758 / 전송 504-2039
 자격진흥과 과장 이신재 사무관 정원호

분류번호 자격 68570 - 4)
 시행일자 1999. 2. 4
 발 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참 조

선		지			
결		시			
점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Engineer사업 참여·추진에 관한 업무 협조

1. APEC 교육포럼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APEC Engineer사업 참여·추진과 관련한 것입니다.
2. APEC 역내 국가간 유사·등등한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 및 우수인력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호주의 주도로 APEC내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에서 APEC Engineer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APEC 역내의 일정자격요건을 구비한 기술사는 APEC Engineer로 등록하고 회원국간 자유로운 기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정비에 관해 관련 국가간의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기술사와 유사한 자격을 보유한 해외 기술사와의 상호인정 문제는 기술사 자격검정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기술자격법의 소관 부서인 우리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교육부·과학기술부와 합의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기술사 검정을 담당하고 있는 귀 공단에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APEC Engineer사업에 적극 참여·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등록위원회(Monitoring Committee)구성
 - 심사등록위원회의 역할은 APEC 내의 조정위원회 참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약체결, 등록(상호인정협약 체결후)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정부공무원, 기술사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협회, 산업계 인사등 기술사 관련 전문가으로 할 것.

우 427-760 경기 과천 중앙 1 / 전화 503-9758 / 전 송 504-2039
자격진흥과 과장 이신재 사무관 정원호

- 기술사 증육 및 평가기준(Assessment Statement) 작성
- APEC HRD내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등 관련 국제회의(1999. 8 예정)에의 적극적 참여
- 타 국가와의 상호인정 협약체결에 따른 모든 업무추진(2000년 이후)
- 1999년도 내에 기술사 상호인정협약 체결이 가능한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

붙 임 : APEC Engineer사업 관련 자료 사본 1부. 끝.

노 동 부 장

